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25. 03. 17.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2호 및 제3호)
- 나.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안 제19조)
 - ·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 (상업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다.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5. 3. 5. ~ 2025. 3. 11.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본 안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 • 애로개선을 위한 건의문]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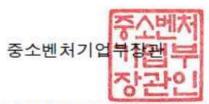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규제 · 애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2024-4280)

- 1. 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적 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건의를 전달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요청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요청의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4. 이에 귀 부처 소관의 규제·애로 개선 건의를 [붙임1]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검토 의견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u>2025.3.5.(수)</u>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의문(2024-4280) 1부
 - 2. 부처 회신양식 1부. 끝.



수십자 광주시장, 군포시장, 남양주시장, 동두천시장, 설남시장, 안산시장, 안설시장, 양주시장, 양평군수, 여주시장, 의 왕시장, 의정부시장, 파주시장, 하남시장, 파천시장, 화설시장

전문위원 호수정 현장대로담당관 이경환

협조자

시행 옵부즈만지원단-935 (2026, 2, 19.) 접수 지역경제과-4606 (2026, 2, 19.)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뭄로 180 (여진동) / http://www.osmb.go.kr

전화번호 044-204-7162 팩스번호 044-204-7179 /haha7832@mail.go.kr /비공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요청

▶소관기관 : 경기도내 지자체 16곳

▶담 당 자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홍수정 전문위원(044-204-7162)

▶ 애로유형 : ①중앙부처 규제, ②광역지자체 규제, ③기초지자체 규제, <u>④기타</u>

Ⅰ.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안내함('23.7.31)
 -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상업지역, 상업지역외)을 구분하여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밀집기준 완화

<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변경(안) >

구 분		밀집기준 변경(안)
대도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으로 밀집
(특별시·광역시 內 읍면동)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으로 밀집
중소도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으로 밀집
(특별도·시, 도 內 읍면동)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으로 밀집
농어촌 (군 內 읍면동)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으로 밀집

- □ (문제점)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되지 않은 지자체는 16개임
 - *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과천시, 화성시

Ⅱ. 개선방안

- □ 지자체별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에 중기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 반영 요청
 - 중기부의 조례 협의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관련 규정 개정(안)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 존	건 의 (안)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 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u>조례</u>로 정하는 곳 을 말한다.
-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해당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 및 밀집기준 완화를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핵심인 개정안으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

[주요 개정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동의 기준 완화(안 제18조)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서류 제출 규정 삭제
-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완화(안 제19조)
 -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20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 혼재 : 50% 이상 해당하는 용도지역 적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례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제17조·제18조·제20조)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임대훈